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2년 1월 29일

발의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속히 확대보급 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회사로 하여금, 우리구 관내에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공급 시설자금을 지방비로 융자지원함에 있어, 융자 범위 및 상환기간등을 타구의 조건과 형평을 유지하고,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기금 관리 공무원의 지정 (안 제5조)

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을 둔다.

┌ 기금 출납 명령관 —— 산업과장
└ 기금출납 공무원 —— 연료계장

- 공급시설자금 융자 범위 (안 제7조 제2호)

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시설비의 70% 이내

-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방법 (안 제8조 제2호)

년리 8% (3년거치, 5년 균등분할상환)

3. 개정근거
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
- 서울특별시 각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조례 준칙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(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)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의 기금출납 명령관은 산업과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공무원은 연료계장으로 한다.

제5조를 제6조로 한다.

제6조를 제7조로 하고,

동조 제2호의 공급시설자금 중

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비의 50% 이내를

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비의 70% 이내로 한다.

제7조를 제8조로 하고

동조 제2호의 공급시설자금 중

년리 8%(3년 균등분할상환)를 년리 8%(3년거치 5년균등 분할 상환)로 한다.

제8조, 제9조, 제10조를 제9조, 제10조, 제11조로 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新・舊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 (안)	비고
	제5조 (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)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금 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둔다. ① 제1항의 기금출납 명령관은 산업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공무원은 연료계장으로 한다.	신설
제6조 (용자범위)	제6조 : 현행 제5조와 같음	제5조의신설로 조문순서정리
2. 공급시설자금 :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비의 50% 이내	제7조 (용자범위) 2. 공급시설자금 :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비의 70% 이내	제5조의 신설로 조문순서정리 및 내용변경
제7조 (이자율등)	제8조 (이자율등)	〃
2.공급시설자금 : 년리8% (3년균등분할상환)	2.공급시설자금 : 년리8% (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)	
	제9조 : 현행 제8조와 같음	제5조의신설로
	제10조 : 현행 제9조와 같음	조문순서정리 〃
	제11조 : 현행 제10조와 같음	〃